#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62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 : 윤준병 · 소병훈 · 박홍배

민홍철 · 김문수 · 황명선

정동영 • 안호영 • 강준현

박민규 · 허종식 · 박희승

이춘석 · 김윤덕 의원

(14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하 "실종아동등"이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실종이나 사고에 특히 취약한 치매환자 및 장애인 등의 경우 위치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일상적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관서의 장이 수색 또는수사를 실시하고, 이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

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장애인 및 치매환자(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도록 배회감지기 등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지적장애인 및 치매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 ①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이하 "지적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상시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이 조에서 "위치확인 전자장치"라 한다)를 보급하고,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보급한 위치확인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 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1.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가 지적장애인등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상시 수집 및 활용 절차, 제2항에 따른 자료 보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열람·조회·제공·공개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현 행 <신 설>	재용조의3(지적장애인 및 치매환 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개인위 치정보 수집 및 비용 지원) ① 경찰청장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사람(이하 "지적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실종 등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뚜 렷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 보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적장애인등의 실종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상시 적으로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하 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전자장치(이하 이 조에서 "위치확인 전자장치"라 한다)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 <u>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u> <u>있다.</u>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후 단에 따라 보급한 위치확인 전 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 를 수신하여 그 자료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 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 1.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 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지적장애인등의 보호자가 지 적장애인등의 이동 경로를 확 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자료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상시 수집 및 활용 절차, 제2항

에 따른 자료 보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열람·조회 ·제공·공개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폐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